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33
----------	------

제출년월일 : 2014. 4.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을 15인 이상 20인 이하를 15인 이상 30명 이하로 변경하여 사회복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안 제4조제1항)
-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는 당연직에서 위원 중 호선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안 제4조제2항)
- 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 라.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안건의 심의 배제(안 제9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20인”를 “30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제3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내지 제6호에”를 “부터 제7호까지”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8.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제2조에 규정된 심의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u>20인</u> 이하로 구성한다.</p> <p>② <u>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u></p> <p>③ <u>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u></p> <p>1. ~ 6. (생략)</p> <p><u><신 설></u></p> <p><u>7.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u></p> <p><u><신 설></u></p>	<p>제4조(구성) ① ----- ----- ----- <u>30인</u> 이하로 ----- -.</p> <p>② <u>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u></p> <p>③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 ----- <u>부</u> <u>터 제7호까지</u>----- ----- ----- <u>각 호의</u> <u>어느 하나</u>----- ----- .</p> <p>1. ~ 6. (현행과 같음)</p> <p><u>7.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u></p> <p><u>8.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u></p> <p><u>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제2조에 규정된 심의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u></p> <p><u>② 위원장은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u></p>

관계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의3제1항 및 2항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보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조제4항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내용 별지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②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5.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제1조의3(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3. 급여기준의 결정
4. 최저생계비의 결정
5. 제18조의3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4명 이내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명 이내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4명 이내

④ 제1항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⑤ 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